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제42호
----------	------------

제출연월일 2007. 6. 7.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수요 학생증가 및 인재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교육관련 예산지원이 불가피함

3. 주요내용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2007년 순수교육경비 예산편성 1,159,036천원(5%)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7. 5. 2 ~ 2007. 5. 2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시세의 6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6.(생 략)</p> <p><신 설></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 -----</p> <p>1. ~ 6.(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보조기준액) <u>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시세의 6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관계법령 발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현황

순번	지역명	연도	조례명	보조비율	제정일자	조례번호
1	창원	2005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세(목적세 제외)의 2.5%	2005.10.31	제679호
2	마산	2005	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세의 5%	2005.8.11	제680호
3	진주	2005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년도 시세의 3%	2005.9.7	제651호
4	김해	2005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당해연도 시세의 3%	2005.7.8	제555호
5	양산	2003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명문 규정없음	2003.12.2	제338호
6	고성	2005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당해연도 군세의 3%	2005.11.04	제1827호
7	거창	2005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당해연도 지방세의 3%	2005.9.14	제1763호
8	밀양	2005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년도 시세의 1.5%	2005.12.7	제553호
9	하동	2005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당해연도 군세의 2%	2005.12.20	제1731호
10	거제	2006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전연도 보통세의 2%	2006.1.6	제603호
11	함안	2006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년도 군세의 3%	2006.1.12	제1733호
12	사천	2006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명문 규정없음	2006.1.10	제676호
13	창녕	2006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명문 규정없음	2006.3.9	제1816호
14	통영	2006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회계연도 시세수입의 3%	2006.2.15	제609호
15	진해	2006	진해시 교육경비 및 식품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전년도 보통세의 3%	2006.5.18	제2025호
16	남해	2006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명문 규정없음	2006.8.7	제1778호
17	의령	2006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당해연도 군세의 5%	2006.11.14	제1652호
18	산청	2006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당해연도 군세의 10%	2006.12.29	제1789호
19	합천	2007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당해연도 군세의 10%	2007.1.8	제1729호
20	함양	2007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당해연도 군세의 3%	2007.1.31.	의회심의